

◎ 환경처고시제91-4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지정(환경청고시 제86-3호), 특별대책지역(경상남도 울산시 및 울주군의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대기오염저감종합대책(환경청고시 제87-2호) 및 환경청고시 제86-3호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내의 신규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환경처고시 제9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1년 8월 2일

환경처장관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1조(특별대책지역) 다음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1. 경상남도 울산·미포 국가공업단지
2. 경상남도 온산 국가공업단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배출허용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7배출허용기준중 1999년 1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동별표의 일산화탄소 배출시설중 나목, 다목, 라목, 염소배출시설중 가목, 황산화물 배출시설중 가목(2) 및 나목(2)와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중 나목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굴뚝자동측정기설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배출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질이 자동으로 연속 측정 기록되어야 하며 자동측정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동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감시체계(Telemetry system)에 연결 전송이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특별배출허용기준 |
|-------------------------------|--|---|
| 일산화탄소 |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다.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로 라. 기타시설 | 400(12)ppm이하 400(12)ppm이하 400ppm이하 |
| 염소 |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 50(12)ppm이하 |
| 황산화물 (SO ₂ 로서) | 가. 일반보일러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석탄연료사용시설 1)굴뚝높이 100m이상시설 2)굴뚝높이 150m이상시설 (나)기타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발전시설 (2)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석탄연료사용시설 1)굴뚝높이 100m이상시설 2)굴뚝높이 150m이상시설 (나)기타고체연료 사용시설 | 100(6)ppm이하 200(6)ppm이하 250(6)ppm이하 |
| 질소산화물 (NO _x 로서) | 다. 고체연료사용시설 | 250(6)ppm이하 |

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신규업체 입주제한과 배출업소 관리) ① 경상남도지사는 울산·미포 및 온산공업단지내의 주민이주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입주시기고자 할 때에는 부산지방환경청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소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고시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되,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는 이고

시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중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③(특별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설치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1991년 9월30일까지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청고시 제86-3호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내의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환경처고시 제91-3호)을 적용하여 동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1. 가스상물질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적용 기간 | |
|--------------------------|---|---------------|--------------|
| | | 1994년12월31일까지 | 1995년1월1일이후 |
| 암모니아 |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 100ppm이하 | 50ppm이하 |
| | 나. 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 | 70ppm이하 | 70ppm이하 |
| | 다. 기타시설 | 200ppm이하 | 100ppm이하 |
| 일산화탄소 |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 400(12)ppm이하 | 400(12)ppm이하 |
| | 나.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로 | 400(12)ppm이하 | 400(12)ppm이하 |
| | 다. 기타시설 | 400ppm이하 | 400ppm이하 |
| 염화수소 | 가. 염산 제조시설 | 15ppm이하 | 6ppm이하 |
| | 나. 인산 제조시설 | 2ppm이하 | 0.6ppm이하 |
| |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 10ppm이하 | 10ppm이하 |
| | 라.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중 산처리시설 | 5ppm이하 | 2ppm이하 |
| |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 60(12)ppm이하 | 50(12)ppm이하 |
| | 바.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 시설 | 2ppm이하 | 0.6ppm이하 |
| |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 50(12)ppm이하 | 50(12)ppm이하 |
| 황화수소 | 가. 석유 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 6ppm이하 | 6ppm이하 |
| | 나. 펌프제조시설 | 5ppm이하 | 5ppm이하 |
| 질소산화물(NO_x 로서) |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 300(6)ppm이하 | 300(6)ppm이하 |
| 불소화물(F로서) | 가. 도기·자기·토기·구조점토·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 10(16)ppm이하 | 5(16)ppm이하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도농도(O_2 의 %)를 말한다.

2. 입자상 물질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적용 기간 | |
|------|--------|---------------------------|---------------------------|
| | | 1994년12월31일까지 | 1995년1월1일이후 |
| 비산먼지 | 모든배출시설 | 1.0mg./Sm ³ 이하 | 0.5mg./Sm ³ 이하 |

◎ 환경처고시제91-4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8월9일

환경처장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유독물

제1조(목적)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유독물에 대하여 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유독물의 제조금지 등 기준)이 고시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구독성(반수치사량 : LD50)의 정도가 15mg/kg이하로 변이원성, 난분해성 또는 축적성이 있는 물건
2. 흡입독성(반수치사농도 : LC50)의 정도가 100ppm이하로 변이원성, 난분해성 또는 축적성이 있는 물질
3.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변이원성, 난분해성, 축적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
4. 기타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제3조(특정유독물의 제조금지 등 품명)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험연구용 시약
2.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물질(삼산화 비소를 제외한다)로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 제조하는 물질로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 칙

-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②(다른 고시의 폐지) 취급제한유해성 독극물지정(환경처고시 제86-10호, '86. 6. 11. 및 환경처고시 제89-9호, '89. 9. 11.)은 이를 폐지합니다.
- ③(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유독물

| 품 명 | 제 한 내용 |
|---|--------------------------------|
| α -나프틸 티오우레아[α -Naphthyl thiourea:ANTU, Bantu, Dirax]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4-나트로페닐)-3-(3-파리딜메틸)우레아 [1-(4-Nitropenyl)-3-(3-pyridylmethyl)urea:Pyriminil, Vacor]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0,0-디메틸 0-p-나트로페닐 티오인산[0,0-Dimethyl 0-p-nitrophenyl thiophosphate:Methyl parathion, Metaphos, Metac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1-디메틸-4, 4-디파리딘음[1, 1-Dimethyl - 4, 4 - dipyridinium:Paraquat, Gramoxo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0,0-디메틸 S-메틸카르바모일에틸 디티오인산[0, 0-Dimethyl S-methylcarbamoylethyl dithiophosphate:Dimethoate, Cyg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1, 2-디브로모에탄[1, 2-Dibromoetha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5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 2-Dibromoethane - 3-chloropropane:DBCP]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0,0-디에틸 0-p-나트로페닐티오인산[0, 0-Diethyl 0-p-nitrophenyl thiophosphate:Parathi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0,0-디에틸 S-[2-(에틸티오)에틸] 포스포로티오산[0, 0-Diethyl S-[2-(ethylthio)ethyl] phosphorodithioate:Disulfoton, Thiodemet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5% 이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품 명 | 제 한 내용 |
|--|---|
| 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2, 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2, 4-Dichlorophenoxy)acetic acid : 2, 4-D, Hedonal, Trinoxol] | 항공방제용과 사료작물 및 잔디의 제초제용으로 제조·수입·판매 및 판매 및 사용금지 |
| 0-메틸 0-(4-브로모-2, 5-디클로로페닐)페닐 티오인산[0-Methyl 0-(4-bromo-2, 5-dichlorophenyl) phenyl thiophosphate:Phosvel, Abar, Leptophos]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2-메틸-2-(메틸티오)프로피온알데히드 0-메틸카르바모일옥신[2-Methyl-2-(methylthio) propionaldehyde O-methylcarbamoyloxime:Aldicarb, Temilk]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N'-(2-메틸-4-클로로페닐)-N,N-디메틸포름아민[N'-(2-Methyl-4-(chlorophenyl)-N,N-dimethylformamide:Chlordimeform, Galecron, Fundal]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다만,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비산 납[Lead arsen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1'-비페닐]-4-아민[(1, 1'-Biphenyl)-4-amine:p-Biphenyl aminodiphenyl]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독의 살충제용으로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산화 트리부틸 주석[Tributyl tin ox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냉각수살균제용으로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3-산화 6, 7, 8, 9, 10, 10-헥사클로로-1, 5, 5a, 6, 9, 9, 9a-헥사하이드로-6, 9-메타노-2, 4, 3-벤조디옥사티에핀[6, 7, 8, 9, 10, 10-Hexachloro-1, 5, 5a, 6, 9, 9a-hexahydro-6, 9-methano-2, 4, 3-benzodioxathiepin, 3-oxide:Endosulfan, Thiodan, Chlorthiep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Arsenious acid, Arsenous oxide] | 신규 제조품목 등록금지 |
| 스트리키니딘-10-온[Strychnidin-10-one:Strychni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2-아미노-3-클로로-1, 4-나프토퀴논[2-Amino-3-chloro-1, 4-naphthoquinone:ACN, Mogeton, ACNQ]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아세트산 달륨[Thallium acet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아세트산 폐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PMA, PMAC]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염소화된 2, 2-디메틸-3-메틸렌비시클로[2.2.1]헵탄[Chlorinated 2, 2-dimethyl-3-methylenebicyclo[2.2.1]heptane:Chlorinated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품명 | 제한 내용 |
|--|--|
| camphene, Toxaphe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오산화 비소 [Arsenic pentoxide: Arsenic acid anhydr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1, 1'-옥시비스 [2-클로로에탄] [1, 1'-Oxybis [2-chloroethane]: sym-Dichloroethyl ether, DCEE, Chlorex]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3, 4, 5, 6, 7, 8, 8-옥타클로로-1, 3, 3a, 4, 7, 7a -헥사히드로-4, 7-메타노이소벤조푸란 [1, 3, 4, 5, 6, 7, 8, 8-Octachloro-1, 3, 3a, 4, 7, 7a-hexahydro-4, 7-methanoisobenzofuran: Isobenzan, Telorin, Omta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2, 4, 5, 6, 7, 8, 8-옥타클로로-2, 3, 3a, 4, 7, 7a -헥사히드로-4, 7-메타노-1H-인덴 [1, 2, 4, 5, 6, 7, 8, 8-Octachloro-2, 3, 3a, 4, 7, 7a-hexahydro-4, 7-metano-1H-indene: Chloridan(e), Toxiclhor, Nirax]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인화 알루미늄 [Aluminum phosphide: Celphos, Phostoxin]과 그의 분해촉진제를 함께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질산 탈륨 [Thallium nitr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S-2-클로로-1-프탈이미도에틸 0,0-디에틸 디티오인산 [S-2-Chloro-1-phthalimidoethyl 0,0-diethyl dithiophosphate: Dialifos, Dialifor, Torak]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1, 2, 3, 6-테트라히드로-N-(트리클로로메틸디오)프탈이미드 [1, 2, 3, 6-Tetrahydro-N-(trichloromethylthio) phthalimide: Captan, Captab, Orthoc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Trichloronitromethane: Chloropicr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은 제외 |
| 1, 1, 1-트리클로로-2, 2-비스(p-클로로페닐)에탄 [1, 1, 1-Trichloro-2, 2-bis(p-chlorophenyl)ethane: DDT]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α, α, α -트리풀루오로-2, 6-динит로-N,N-디프로필-p-톨루이딘 [α, α, α -Trifluoro-2, 6-dinitro-N,N-dipropyl-p-toluidine: Trifluralin, Treflan, Elancola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N-nitrosamine을 0.5ppm 이하 함유한 농약제조용은 제외 |
|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 다만,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 피씨피 등 염류는 제외 |
| 페닐수은산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 [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PTA-B]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플루오로아세트산 아미드 [Fluoroacetic acid amide: Fusol, Fluoroacetamid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exachlorocyclohexane: BHC, HCH]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1.5%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품명 | 제한 내용 |
|--|---|
| 1, 2, 3, 4, 10, 10-헥사클로로-6-7-에폭시-1, 4, 4a, 5, 6, 7, 8, 8a-옥타히드로-액소-1, 4-에소-5, 8-디메타노나프탈렌 [1, 2, 3, 4, 10, 10-Hexachloro-6, 7-epoxy-1, 4, 4a, 5, 6, 7, 8, 8a-octahydro-endo, exo-1, 4-exo-5, 8-dimethanonaphthalene: Endrin, Nendr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1, 2, 3, 4, 10, 10-헥사클로로-6-7-에폭시-1, 4a, 5, 6, 7, 8, 8a-옥타히드로-액소-1, 4: 5, 8-디메타노나프탈렌 [1, 2, 3, 4, 10, 10-Hexachloro-6, 7-epoxy-1, 4a, 5, 6, 7, 8a-octahydro-endo, exo-1, 4: 5, 8-dimethanonaphthalene: HEOD, Dieldrin, Octalox]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1R, 4S, 4aS, 5S, 8R, 8aR,)-1, 2, 3, 4, 10, 10-헥사클로로-1, 4, 4a, 5, 8, 8a-헥사히드로-1, 4: 5, 8-디메타노나프탈렌 [(1R, 4S, 4aS, 5S, 8R, 8aR,)-1, 2, 3, 4, 10, 10-Hexachloro-1, 4, 4a, 5, 8, 8a-hexahydro-1, 4: 5, 8-dimethanonaphthalene: HHDN, Aldrin, Octale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
| 1, 4, 5, 6, 7, 8, 8-헵타클로로-3a, 4, 7, 7a-헵타히드로-4, 7-메타노인덴 [1, 4, 5, 6, 7, 8, 8-Heptachlor(o), Heptamul]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6%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공산 품 제조 첨가용은 제외 한다. |
| 황산 탈륨 [Thallium sulfat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

◎ 서울지방환경청공고제91-8호

운행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3조 및 소음진동 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해당지역의 정비업소는 1991년 8월23일까지 서울지방환경청장에게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것을 추가 공고합니다.

1991년 8월 10일

서울지방환경청장

○ 신청대상지역 : 29개지역

- 경기도(23개지역) : 1. 과천시 2. 구리시 3. 동두천시 4. 미금시 5. 의왕시 6. 하남시 7. 가평군 8. 강화군 9. 고양군 10. 광주군 11. 김포군 12. 남양주군 13. 안성군 14. 양주군 15. 양평군 16. 여주군 17. 연천군 18. 용진군 19. 이천군 20. 파주군 21. 평택군 22. 포천군 23. 화성군

- 강원도(6개지역) : 1. 양구군 2. 인제군 3. 철원군 4. 춘성군 5. 홍천군 6. 화천군 ◀